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12.12.11개정, '13.12.12시행)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 나.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안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보강의 일환으로 '14년도 사회복지직 채용을 위해 정원을 증원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증원에 따른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1) 정원의 총수 : 1,607명 → 1,610명(+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79명 → 1,582명(+3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정할 때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안 별표1)

구 분	일 반 직	별 정직 · 정 무 직
비 율	99%이상	1%이내

라.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별표2)

- 1) 기능직이 폐지되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별정직 중 비서인력을 제외하고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채정기준을 삭제

【일반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 력 관
현 행	1%이내	7%이내	27%이내	31%이내	26%이내	8%이상	
개 정	1%이내	7%이내	23.8%이내	28.8%이내	26%이내	12.4%이상	1%이내
조 정			△3.2%	△2.2%		+4.4%	+1%

- 2) 별정직 중 비서인력을 제외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

【별정직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50%이내	50%이상		
개 정		100%이내			

마. 직종별 ·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1) 일반직 : 1,315명 → 1,572명(+257명)

○ 5급이상 : 변동없음

○ 6급이하 : 1,225명 → 1,472명(+247명)

- 사회복지직 순증 : 3명(+3명)

- 기능직 243명 → 일반직 : 243명(+243명)

- 별정직(레크레이션 지도사) → 일반직 : 1명(+1명)

* 공석직위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 별정직 → 전문경력관 나군 : 10명(+10명)

2) 별정직 : 12명 → 1명(△11명)

3) 기능직 : 삭제(△243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12.12.11개정, '13.12.12시행)

나. 예산조치 : 총액인건비 내 운용

1)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90,000천원 정도(국비 70%지원)

다. 합 의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07명”을 “1,6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79명”을 “1,582명”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한다.

제5조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별정직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

②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 계약직, 임시직”을 “임기제”로 한다.

③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내부행정의 단위사무명란 중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별정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방호직렬공무원,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위생직렬·조리직렬·간호조무직렬·운전직렬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로, “전문직”을 “임기제”로 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 정직·정무직
비율	99%이상	1%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7% 이내	23.8% 이내	28.8% 이내	26% 이내	12.4% 이상	1% 이내

※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율	3%이내	97%이상	9%이내	91%이상

※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00%이내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10	1,610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572	1,572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9	29	3	4	4	12	27
6급이하 소계	1,472	1,472					
전문경력관 소계	10	10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607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579명</u>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10명</u> ----- -----. 1. ----- <u>1,582명</u> 2. (현행과 같음)
제4조(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 · 면 ·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 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 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 응하는 <u>직급별 정원</u>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 ----- ----- ----- ----- --. ----- ----- <u>직급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의 직위군 포함)</u> ----- -----.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 관별로 두는 직렬별 <u>정원</u> 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 ----- <u>정원(지방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u> 은 -----.

별표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2%이상	17%이내	1%이내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7%이내	31%이내	26%이내	8%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7%이내	25%이내	30%이내	38%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9%이내	91%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50%이내	50%이상		

개

정

안

[별표 1]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9%이상	1%이내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3.8%이내	28.8%이내	26%이내	12.4%이상	1%이내

2. 삭제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9%이내	91%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00%이내			

현행								개정안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07	1,607						총 계	1,610	1,61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15	1,315						일반직 계	1,572	1,572					
3급	1	1						3급	1	1					
4급	10	5	1	1	1	2		4급	10	5	1	1	1	2	
5급	79	29	3	4	4	12	27	5급	79	29	3	4	4	12	27
6급이하계	1,225	1,225						6급이하 소계	1,472	1,472					
별정직 계	12	12						전문경력관 소계	10	10					
5급 상당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계	12	12						5급 상당							
연구직 계	3	3						6급상당이하소계	1	1					
연구관								연구직 계	3	3					
연구사	3	3						연구관							
지도직 계	33	33						연구사	3	3					
지도관	3				3			지도직 계	33	33					
지도사	30	30						지도관	3				3		
기능직 계	243	243						지도사	30	30					
								삭제	삭제	삭제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11531호, 2012.12.11>

-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 계약에 따른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 3명을 증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신규 사회복지직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을 기준으로 추계하기로 한다.

나.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증원분은 2014년도 사회복지직 충원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고보조금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315,000
	소계(a)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315,000
세출	인건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소계(b)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 총 비용(a-b)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315,000
도 비						
시 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민 간						
기 타						
합 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총무과 장정수
연락처	054-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본 개정안은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9.30.)에 따른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3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인건비 기준은 30,000천원으로 하여 추정하였으며 매년 70% 국비가 지원된다.

가. 사회복지직 3명 증원 : 30,000천원 × 3명 = 90,000천원

※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기준 70% 국비지원